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12. 18.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7일

나. 발의자: 전승관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제266회 제2차 영등포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전승관 의원)

가. 제안이유

○ 청년정책 추진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년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커뮤니티 활동, 취업 정보 제공,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 문화·체육 등 청년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개정 배경 및 취지

○ 현행 조례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제25조)를 두고 있으나, 지원기준인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라는 문구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등

포구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연계하여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서는 지원활동 유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조제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청년 커뮤니티 활동 ▲해외취업 정보제공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 ▲문화·체육활동 등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함으로써 지원의 범위와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5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항은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해외취업 정보제공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사업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활동 사업 ▲체육활동 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커뮤니티 활동·직업역량 개발·문화 및 체육활동 등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포함한 지원항목을 구체화함으로써, 청년정책이 단일 사업 중심이 아닌 디종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또한,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단체 등의 자율적 활동이 구정의 청년정책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민·관 협력 기반의 청년정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9
------------------	-----

발의연월일: 2025. 11. .

발의자: 전승관 · 차인영 · 남완현 · 김지연  
최인순 · 정선희 의원 (6인)

### 1. 제안이유

청년정책 추진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년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커뮤니티 활동, 취업 정보 제공,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 문화·체육 등 청년 삶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및”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추진하는 청년단체, 개인,”으로, “행정적 · 재정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 재정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
2. 해외취업 정보제공
3.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사업
4.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5. 문화활동 사업
6. 체육활동 사업
7. 동아리 활동 지원
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u>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25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u>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추진하는 청년단체, 개인,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u>
<u>&lt;신 설&gt;</u>	<u>1. 커뮤니티 활동지원 사업</u>
<u>&lt;신 설&gt;</u>	<u>2. 해외취업 정보제공</u>
<u>&lt;신 설&gt;</u>	<u>3.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사업</u>
<u>&lt;신 설&gt;</u>	<u>4.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u>
<u>&lt;신 설&gt;</u>	<u>5. 문화활동 사업</u>
<u>&lt;신 설&gt;</u>	<u>6. 체육활동 사업</u>
<u>&lt;신 설&gt;</u>	<u>7. 동아리 활동 지원</u>
<u>&lt;신 설&gt;</u>	<u>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